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173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중구 홍보대사 운영조례의 사전적·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결격사유 조항 전체 삭제 (제 5조)
- 운영부서 “공보실”을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변경 (제 6조)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홍보전산과, 전화 : 02-3396-4962,  
팩스 : 02-3396-9022, email : hrcho7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공보실”을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사람</li><li>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li>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li></ol>	<p>제5조(결격사유) 삭제</p>
<p>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공보실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p>	<p>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b>홍보업무 담당부서</b>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b>홍보업무 담당부서</b>와 협의하여 진행한다.</p>